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그 일곱 번째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시 보기 II

■ 일시: 2003. 10. 1. (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신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교사회 · 노들장애인아학 · 다문화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의수족연구
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림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 오픈에스이저부
서울공두리동사회 · 성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생활문화진흥회 · 스키이콜벤 · 시각장애인여성회 · 여성장애인직조모임
"다들"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시민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 극단 "끼관" ·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
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산재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지
원지원센터프렌드케어 · 태화생숙는집 · 푸른하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여성마비복지회 · 한국여성마비정
에인연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
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
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재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
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Md1.27.7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 그 일곱 번째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시 보기 II

■ 일시: 2003. 10. 1. (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교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다운회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의수족연구
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름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 ·
서울공두리동사회 ·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카이콜벤 · 시각장애인여성회 ·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울"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시인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 ·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
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
립지원센터프렌드케어 · 태화생솟는집 · 푸른하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
애인연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
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
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재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
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토 · 론 · 회 · 순 · 서

사회 : 이희정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다올” 회장)

○ 1부. 여는 이야기

- 주제발표 1
몸의 정상성과 차별 - ‘다른 몸’들에 대한 차별과 장애여성/박하연..... 1
- 주제발표 2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차별/ 장명숙 11
- 주제발표 3
청각장애여성의 모성권 사례발표/봉청자23
- 주제발표 4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이호선 24

○ 2부. 주제를 토론

- 주제를 토론 1
/ 이동원..... 39

몸의 정상성과 차별

- '다른 몸'들에 대한 차별과 장애여성 -

박하연(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수료)

I.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선 자리 드러내기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여성이고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군포여성민우회)에 소속된 사람인 내가 어떤 입장에서 장애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장애여성의 문제가 비장애여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한 장애여성으로부터 “박하연씨,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보통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는 이름과 소속을 대답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장애여성에게 '여성학'과 '민우회'라는 소속을 말했지만 대답하는 나도, 듣는 그 장애여성도 뭔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느꼈던 것 같다. 아마도 그 장애여성은 “당신은 왜, 어떤 입장에서 장애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

2000년 1월 군포에서 장애여성 A씨가 극심한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A씨는 바로 구속되었고 군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 서울의 장애인단체, 장애여성단체가 연대체를 꾸려서 A씨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 연대체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A씨가 폭력을 당하던 도중 생명에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칼로 남편을 살해한 만큼, A씨가 무죄임을 인정하고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원 휴학 중이던 나는 그 당시 군포여성민우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일로 처음 장애여성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특히 A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오히려 내 머리 속은 더 복잡해졌다.

대학원에 복학한 이후, 여성학과의 어느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누가 장애여성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한번 써보라는 제안에 내 의식 한쪽에 놓여져 있던 모호한 기억이 살아나 기존의 장애여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여성문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그 다음학기의 다른 교수님 수업시간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2회 수업이 이루어졌고 장애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수업에 오셔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장애여성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여성의 이슈가 여성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느껴졌으며 그 이후 계속 관심

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한번 더 말하자면 장애여성이슈는 여성학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각 학교의 여성학 전공자 중에서도 장애여성이슈에 관심을 갖고 장애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여성운동가가 여성학과나 여성문제 관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초빙되고 있는 상황, 장애여성이슈와 관련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¹⁾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여성학과 장애여성문제가 친화력을 갖게 된 이유는 여성학 내에서 '여성' 범주 내의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몸(Body)'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등장한 상황²⁾과 맞물려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나 역시 '여성' 집단 내 차이의 문제와 '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중여성 운동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여성문제는 여성학을 하는 사람이 갖는 만큼의 친화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비장애여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제외한 이슈에서 장애여성운동과 연대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비장애여성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에서 장애여성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비장애여성운동가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얼마 전 두 명의 장애여성운동가가 각각 "여성운동이 장애여성을 여성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이한 의견이 모두 장애여성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상이한 의견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장애여성운동가와 비장애여성운동가가 현재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 역시 그러한 과정 중 하나로써, '몸의 다름'의 문제를 통해 장애여성의 문제를 가시화시켜 보고자 한다. 억압과 통제의 기반인 동시에 지배가치 재생산의 장소(예를 들어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로써 몸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 1) 1998년 이후로 여성학을 비롯해 사회복지학이나 그 이외의 학문 영역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학위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최지선, 2003, 연세대학교),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한영애, 2002, 경원대학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조옥, 2002, 단국대학교),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황명희, 2002, 연세대학교), '여성장애인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김의자, 2002,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정성운, 2002, 신라대학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신수정, 2001, 연세대학교), '여성지체장애인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을 위한 질적 조사'(최명주, 2001,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이 장애의 심리적 극복에 미치는 영향'(이미옥, 2000, 성균관대학교), '여성장애인복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김대규, 1999, 대구대학교), '여성장애인의 역할 수행 능력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김성희, 1999,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장애인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경숙, 1999, 가톨릭대학교),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김은정, 1999,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김정애, 1999,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장애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강민희, 1998,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대학원), '지체장애여성의 결혼과정과 생활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이성덕, 1999, 계명대학교).
- 2) '여성' 범주 내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몸의 경험과 관련시켜 논의한 글로는 김은실(2001a)의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며」 참조.
- 3) 최근 '소수자 여성'의 입장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소규모의 여성운동단체는 레즈비언, 장애여성, 성매매 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 '여성'의 문제에서 배제된 '소수자 여성'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대중여성운동단체에 '소수자 여성'의 문제는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II. 몸의 정상성과 ‘다른 몸’에 대한 차별

‘정상’(正常)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바른 상태’, ‘이상한데가 없는 보통 상태’⁴⁾, ‘아무 탈없이 늘 그대로인 상태’⁵⁾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대부분 ‘비정상’의 상태와 관련해서 사용된다. “정상이 아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처럼 ‘비정상’의 상태를 표현할 때, 혹은 ‘비정상’에서 방금 벗어났을 때 ‘비정상이 아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정상’의 상태에서 ‘정상’은 얘기되지 않으며 ‘비정상’의 상태와 관련해서만 ‘정상’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상’과 ‘비정상’은 서로 대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상’상태의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상’ 상태를 필요로 하는 위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표준의’, ‘규격대로의’, ‘전형적인’이라는 영어사전적 의미 normal의 번역어로서 ‘정상적인’을 말한다.⁶⁾ “the normal temperature”(정상체온)이 곧 36.9°C를 의미하는 것처럼 normality로써의 ‘정상’은 평균(average), 정규분포를 이루는 인구의 다수가 갖는 특성이라는 의미에 가까우며⁷⁾ 따라서 ‘비정상’은 ‘인구의 다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지 못한 소수의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구의 다수가 갖는 특성’이나 ‘소수의 특성’의 내용 자체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즉 누가 ‘다수’인가는 정확한 숫자의 측정에 의한다기보다 어떤 집단이 가시화될 수 있는 집단이고 어떤 집단이 비가시화된 집단인가, 엄밀히 말해 비가시화되길 바라지는 집단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6.9°C라는 ‘정상체온’은 누구의 몸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가? 생리할 때, 혹은 임신했을 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여성의 몸이 고려되었는가? 항상 몸의 움직임이 많아 몸에 열이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몸이 고려되었는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는 용어가 실제의 숫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기반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상’은 ‘아무 탈 없음, 바른 상태임’의 한국적 의미와 ‘평균, 표준’의 서구적 의미가 혼재해 있다. 이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의학이나 생물학 등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정상’의 개념이 유포되면서 기존의 정상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정상’의 의미가 몸과 만날 때 ‘정상적인 몸’이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바른”) 인구의 다수가 차지하는 몸처럼 인식되며 비정상적인 몸은 부도덕하고 희귀한 몸으로 치부된다. 몸의 정상성(몸에 정상상태가 있다는 인식)은 정상에서 벗어난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희화화되고 배제시킴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1. 희화화되는 몸 - 여성의 몸, 왜소한 남성의 몸

4) 인터넷 네이버, 야후, 엠파스 국어사전 검색

5) 한국어대사전,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현문사

6) 인터넷 네이버, 야후, 엠파스 영어사전 검색

7) 서구의 ‘정상성’ 개념을 통계학의 형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데이비스(L.J. Davis)의 관점은 서구 사회의 ‘정상’이 ‘평균’과 연관된 개념임을 보여준다. 데이비스는 19세기에 장애의 문제가 어떻게 정상성 개념과 연결되면서 우생학적 시선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정상이나 규범 norm은 정규분포를 이루는 인구의 다수를 의미하며 정상성 개념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정근식, 2001; p.261 재인용)

TV 코미디 프로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몸이 희화화됨으로써 비정상의 몸으로 규정되고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성차별적 설정으로 악명 높은 코미디 프로인 개그콘서트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황마담'은 여성성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이다. 거기서 '황마담'은 여성과 '마담'이라는 요소가 그 인물을 구성하는 전부이다. 즉 단지 '여성'이고 '마담'이라는 이유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마담'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담'의 의미는 축소되어 있고, 따라서 '여성'으로써의 '황마담'이라는 설정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황마담'의 얼굴표정, 말투, 가슴, 엉덩이,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은 '여성'의 몸이 하나의 '대상'으로써 분해되고 왜곡(과장이 아니라!)됨으로써 코미디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몸'으로 환원되어 희화화되고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몸에 대한 희화화, 곧 여성에 대한 희화화는 오래 전부터 TV 코미디 프로(80년대 김형곤의 '아줌마' 분장이나 그 이후 심형래의 '아줌마' 분장), 그리고 대학 MT에서 여장 코너⁸⁾, 영화소재⁹⁾에 까지 낫설지 않은 소재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연기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코드화되어 대상화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영화 <찜>에서 안재욱이 여장을 하는 과정 즉, 화장이나 옷을 입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 비누 거품을 풀고 목욕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수첩 속을 미용실 카드, 피부 마사지 카드로 가득 채운다던가 하는 설정은 사회가 요구하고 있거나 혹은 상상하고 있는 '정상적'인 여성의 모습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장남자들의 외모와 태도를 볼 때 이들이 여성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여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여장남자에서 남성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어떻게 코드화되어있는지 역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황마담'이 남성으로 되돌아올 때 그는 가발을 땅에 힘껏 내던지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굵은 목소리로 소리지른다. 이는 '황마담'에서 남성으로 되돌아오는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연출로 보이는데, 여기서 남성은 공격적인 행위와 말투, 굵은 목소리로 대표된다. 한편 영화 <찜>에서도 여장남자 '채영'이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은 지나가던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 때 음료수 캔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모습과 같이 물리적인 힘의 강함,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격성, 강한 힘, 굵은 목소리 등이 남성을 대표하는 특성, 즉 남성의 정상성으로 상징되고, 이러한 남성 정상성은 남성 집단 내 소수자를 만들어낸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본 사람이라면 "향숙이"를 부르는 독특한 캐릭터를 기억할 것이다. 얼마전 한 남성이 오락프로에서 이 캐릭터를 흉내내는 것을 보았다. 당연히 굉장히 웃겼는데 한편으로는 이 캐릭터는 왜 웃음을 유발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볼게 되었다. 이 캐릭터는 약한 정신지체인으로 나오고, 그 목소리가 상당히 작고 가늘며 말투나 말할 때의 표정은 다분히 어린이화 혹은 여성화 되어 있다. 또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8) 남자들을 여장시키서 "예쁜 여자 뽑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90년대 초 대학 MT에서는 감초처럼 있어왔다.
 9) 여장남자를 소재로 한 영화는 한국영화 중에는 <찜>, 외국영화 중에는 <투씨>, <뜨거운 것이 좋아>, <미세스 다웃 파이어>가 있다.

키가 매우 작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몸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적인 몸(대표적으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송광호의 몸)에서 벗어난 몸을 가진 남성, 왜소한 몸을 가진 남성은 정신지체, 어린 아이같은 혹은 여성스러운 표정과 말투와 결합되어 코미디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배제되는 몸

뚱뚱한 여성 - '이영자 사건'

2001년 6월 '이영자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뚱뚱한 여성의 전형으로 취급되어 온 이영자가 살을 왕창 빼서 화제가 되었는데, 후에 그녀는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영자는 운동으로 살을 뺐다고 주장한 반면 성형외과 의사는 이영자가 수술로 살을 뺐다고 주장했다. 나는 여기서는 이영자가 살을 뺐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뚱뚱한 여성의 대명사인 이영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왕창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을 뺐는지 무용담을 얘기하고,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고 말하다가 성형외과 의사의 폭로 이후 극도의 공황상태에 빠진 모습, 그리고 TV에서 사라진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은 뚱뚱한 몸을 가진 여자가 우리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과 배제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영자 사건'에 대한 어느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영자가 연예계를 떠나야 한다고 응답한 네티즌 중 여성은 7.6%임에 비해 남성은 16.4%였고, 지방흡입수술사실을 폭로한 의사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답변은 여성은 84.1%임에 비해 남성은 76.0%에 그쳤다.¹⁰ 이 차이는 이영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그로 인한 배제가 단지 그녀가 지방흡입으로 살을 빼고서는 운동을 살을 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자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녀간의 의견차이나 미인대회 존재에 대해 남녀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실¹¹)은 '뚱뚱한 여성의 몸'과 그와 반대되는 '날씬한 여자의 몸'이라는 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몸에 부착되는 의미들이 남성의 시선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남성 관리자과 남성의 시선을 가진 여성에 의해 방송국이 운영되는 한, 이영자의 복귀는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몸- 영화 <죽어도 좋아>의 반향

2002년 7월, 영화 <죽어도 좋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70대 노인의 성과 사랑을 그린 최초의 영화라는 점,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두 번이나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점이 맞물려서 누구의 성(sexuality)이 '정상'으로 이해되고 있고 어떤 성행위가 '정상'으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 영화가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는 노인의 성이 우리 사회에서 왜 그 동안 등장하지 안아왔는지, 왜 우리의 성 인식에서 배제되어 왔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0) 윤길주 기자, 『뉴스메이커』, 2001.6.21, www.embrain.com/aboutus/news/e-research-010621.htm

11) 보도에 따르면 미인대회 존재에 대한 남녀 네티즌의 생각은 상이하다. 여성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67%)한 반면 남성은 존속에 대한 찬성의 입장(59%)이 더 많다.(송대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9.10.5; 김은실(2001b) p. 209, 재인용)

그 동안 한번도 노인이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행위 하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영화의 등장은 그야말로 정치적이었다. 영화를 직접 보지 못해서 노인남성의 성과 노인여성의 성이 얼마나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무성적 존재로 인식되어왔던 '노인' 집단의 성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논의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동안 노인의 성이 왜 우리 의식 속에 없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란 젊은 남녀의 성이었을 뿐 게이나 레즈비언의 성, 노인의 성, '미성년자'의 성, 혼자의 성으로써 자위는 모두 비정상적인 성으로써 금기의 영역에 간혀 있었다. 또 장애여성의 성도 이들과 함께 금기의 영역에 간혀 있어왔다. 결국 '정상적인 성'이란 '정상적인 몸을 가진 젊은 남녀의 성기결합'으로 축소되고 '비정상'으로 분류된 몸을 가진 사람, 혹은 이성간의 성기결합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성은 '변태'나 '정신병자'라는 표현으로 노골적으로 혐오되고 배제된다.¹²⁾

3. 양성성의 탈을 쓴 몸 - 꽃미남과 엽기녀

꽃미男과 엽기女.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성별 이분구도에 의한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외모 및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소년'으로도 불리는 꽃미남은 아래의 화장품광고에 나오는 남성처럼 과거의 우락부락한 외모와 터프한 성격의 남성과는 반대로써 선이 가늘고, 피부가 희고,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남성을 지칭하고 엽기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 <조폭마누라>,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처럼 왈가닥, 거칠음, 황당함으로 점철된 여성을 지칭한다. 나는 이들이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대안적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의 정상성에 기반한 일탈로써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에 대해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작하듯이 이들은 새로운 여성상과 남성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고 난 이후에는 뭔가 껌직함이 남는 것을 느끼게 된다. 꽃미남의 외모는 기본적으로 큰 키에 전체적으로 건장한 몸을 가졌으며, 우락부락한 근육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근육이 전혀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왜소한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꽃미남으로 거론되는 안정환은 가장 남성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축구의 대표적 선수로써 우리에게 더 익숙하며 기존 남성성의 전형적인 특성인 근력과 공격성의 이미지에 기반해서 꽃미남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엽기녀의 외모 역시 기존의 몸의 정상성, 특히 여성 몸에 대한 남성의 기준인 적당한 키에 날씬한 몸매라는 기준에 한층 더 부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돋보이고 재미를 자아내는 것은 이런 태도가 이들의 가냘

12) '비정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한 예로 홍석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홍석천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이후 바로 방송출연을 '금지'당한 것은 성적 소수자가 제도권 내에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픈 외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몸은 '전형적인'(정상성에 기반한) 여성의 몸으로써 남성의 시선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언제든지 전통적인 여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엽기녀는 언제든지 '사랑스런 그녀'가 되어 남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몸을 갖고 있고 엽기녀의 이런 특성이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여성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게 한다.

Ⅲ. 몸의 정상성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몸의 정상성은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뿐만 아니라 비장애여성, 비장애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뚱뚱한 여성, 왜소한 체격의 남성, 노인, 성적 소수자, 장애여성, 장애남성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몸이 정상성이라는 규범에 영향 받고 있으며, 개별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몸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몸의 정상성의 작동방식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뚱뚱한 비장애여성의 몸과 장애여성의 몸, 장애여성의 몸과 장애남성의 몸을 단지 다양한 몸, 다른 몸이라는 범주로 묶는 것은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의 개별 경험을 동질화시킴으로써 이들간의 차이를 무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난 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별의 내용은 서로 상이하며, 특히 이들 간에도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여성은 어떤 측면에서 장애남성 및 정상성을 벗어난 비장애여성과 다른 경험을 하는가?

우선 분명히 장애여성은 장애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화장실로 인해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은 모두 무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경험을 하지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경험은 상당히 다르다. 장애여성에게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은 무성적 존재로 규정됨으로 인한 불쾌감을 겪는 동시에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된다. 이는 남성의 성적 노출과 여성의 성적 노출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의미화되고 있는 구조, 더 나아가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다르게 적용되는 성에 대한 이중기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성기 노출은 여성에게 성폭력이 되지만('바바리맨'의 예), 여성의 성기 노출은 남성에게 돈을 주고 즐길 쾌락의 대상('스트립 쇼'의 예)이 되는 현실¹³⁾에서 중성적인 공간으로써의 '장애인 화장실'은 현실적으로 '남성화된 공간'이 된다.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경험 차이의 또 다른 예는 장애인 집단 내 성

13) 정희진(2001),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또 하나의 문화

차별과 성폭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장애남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장애여성은 성폭력의 고통 그 자체로 일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만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힘으로써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된다. 장애여성의 성은 그것이 성폭력 피해경험이더라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시되고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쫓쫓쫓... 여자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이처럼 장애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기와 억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장애남성의 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허용적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의 이중기준, 즉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성에 대한 가치판단 때문이다. 여성이 성적 주체로써 자신의 성적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금지시되어 온 사회구조에서 장애여성은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욱 금지시된다. 장애여성은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 금지시 되어온 성의 테두리 안에서 성을 얘기하는 것, 성 차별적인 성의 이중기준에 대해 비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경험 역시 다른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비장애여성은 운동, 다이어트나 성형수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몸을 갖고 있다. 즉 비장애여성은 자신의 몸을 ‘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만 장애여성은 몸을 ‘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뿐더러 가슴이나 골반과 같이 장애여성의 몸을 고려한 보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한편 성장과정에서 월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장애여성에게 월경은 ‘특별한 사건’, ‘있어서는 안될 일’, ‘(비장애여성의 몸에 맞추어져 있는 월경시스템-생리대, 생리대자판기, 화장실 시간 등-으로 인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게 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은 한 여성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적은 비용의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자궁 적출을 강요당하는 여자는 임신할 수 있는 권리가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¹⁴⁾처럼, 월경할 때마다 주변 사람, 환경에 의해 부정적인 느낌을 접해야 하는 장애여성에게는 월경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여성체험의 공통성’¹⁵⁾ 혹은 ‘장애체험의 공통성’이 어느 선까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요구할 때 장애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지(단지 물리적 시설의 안전성만 고려한 채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주의 성교육에서 장애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지(비장애여성의 몸 경험을 모든 여성의 몸 경험으로 일반화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운동의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관점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4) 벨혹스, 2002; p.73

15) 장필화, 1999; p.238

IV. 나오며: 장애여성의 관점 배워가기...

비장애여성으로써 장애여성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무거운 과정이다. 비장애여성의 경험과 장애여성의 경험은 별개적이기도 않지만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매 순간 신중함으로 필요로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애여성의 관점은 비장애여성의 몸에 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여성의 관점은 하루 아침에 혹은 한달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애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몸에 배게 되는 것이며, 비장애여성인 나 역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관점 혹은 장애여성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는 짧은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적당한 대답을 찾기 어렵다. 장애여성의 관점이나 입장은 한마디로 대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굳이 짧게 대답하자면 “장애여성의 의견 그 자체”라는 다분히 동의 반복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동권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권에 대해서 장애여성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장애여성의 관점이며 이는 ‘이중차별’ 개념이나 통계수치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복잡, 다양한 경험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운동도 ‘이중차별’이나 통계수치 너머에 있는 장애여성의 복잡,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정치화시킬 때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과의 비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은실(2001a),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며」,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1b), 「성 산업 유입 경험을 통해 본 십대여성의 성과 정체성」,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은실 외(2002),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한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벨혹스(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 장애여성공감 편집팀(2003), ‘장애여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공감」 6호, 장애여성공감
- 장필화(1999), 「여성 체험의 공통성」, 『여성·몸·성』, 또 하나의 문화
- 정근식(2001),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당대비평」 14호, 삼인
- 한국어대사전,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현문사
- 스탠더드 영한사전, 성문각

<참고 인터넷 사이트>

윤길주 기자, 『뉴스메이커』, 2001.6.21,

www.embrain.com/aboutus/news/e-research-010621.htm

인터넷 사전 검색: 네이버(<http://dic.naver.com/>), 야후(<http://kr.alldic.yahoo.com/>),

엠파스(<http://alldic.empas.com/>)

이미지 검색:

- (1) '황마담'-엠파스([http:// news.empas.com/show.tsp/20030831n00361/?s=317&e=495](http://news.empas.com/show.tsp/20030831n00361/?s=317&e=495))
- (2) '살인의 추억'-야후(<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detail?p=imgid%3A322505 &q= %bb%ec%c0%ce%c0%c7+%c3%df%be%ef&num=16>)
- (3) '죽어도 좋아'-야후([http:// kr.imagesearch.yahoo.com/search/detail?p=imgid%3A29566 0&q= %c1%d7%be%ee%b5%b5+%c1%c1%be%c6&num=4](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detail?p=imgid%3A29566 0&q= %c1%d7%be%ee%b5%b5+%c1%c1%be%c6&num=4))
- (4) '꽃미남'-여성신문 743호(2003.9.20) '베컴과 안정환의 공통점-메트로섹슈얼과 사귀실래요?' (<http://www.womennews.co.kr/default.asp>)
- (5) 동갑내기 과외하기-야후(<http://kr.movies.yahoo.com/movies/movie.asp?mid=7218>)
- (6) 조폭마누라-야후(<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detail?p=imgid%3A244073& q= %c1 %b6%c6%f8%b8%b6%b4%a9%b6%f3&num=17>)
- (7) 열기적인 그녀-네이버(<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BF%B1% B1% E2 %C0%FB%C0%CE+%B1%D7%B3%E0&where=iphoto>)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차별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I. 들어가는 이야기

나의 몸이 다른 사람들의 몸과 무언가 다르다는 자각을 처음 했던 아주 어린 날을 기억한다.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허격!'이었다. 그 다름은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절대 고독의 순간이었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장애를 지녔든 간에 그렇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순간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그것을 부여안고 성장하는 과정... 삶의 한 부분에 대해 과해쳐 보고자 한다.

2003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도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중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로 인해서 폭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가정폭력의 사례와 성폭력의 사례에 대하여, 여성팀 세미나에서 모아진 이야기들을 반영해 담아 보고자 한다.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눴던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II. 여성장애인의 차별에서 나타나는 폭력

가.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1.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있었던 자도 포함),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가족 내 약자로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 닫아 걸은 은폐된 가정에, 존재 가치조차 희미한 때로 없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리라.

어떠한 폭력이건 폭력에는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가정폭력도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여성장애인이 가정에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가장 약한 여성장애인이 폭력을 당하게 마련이다.

때로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혹은 가족 성원에 의한 은폐로 혹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으로 가족 내에서 길들여져 생의 대부분을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에 알려지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이다.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유형

1) 언어적 폭력

여성장애인에게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학대보다 더욱 쉽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 무학의 지체장애 K씨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지체장애 2급의 K씨는 집에서 학교를 놓지 않아 무학의 여성이다. 지금은 30대가 훌쩍 넘어버린 K씨 학교에 왜 안 넣어줬냐는 질문을 최근 어렵게 하였었는데 그 부친께서

“네 주제에 배워서 뭐하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라고 단 칼에 자르는 말을 했단다.

의출을 하려고 해도 “그 몸에 어딜 나가, 갈곳이 있거나 하나?”

“너 같은 게 집에 있어 되는 일이 없어. 재수가 없을러니...”

2) 신체적 폭력

칼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발로 차는 행위, 물건을 들어 던지는 행위, 감금시키거나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를 존재조차 희미하게 하는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다.

→사례 : 뇌변병 1급의 여성장애인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살해

지난 2000년 1월 19일 비장애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던 여성장애인 Y씨는 그날도 자신의 머리를 잡아채어 방바닥에 얼굴을 짓이겨대자 기절까지 했다가 순간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떨며 칼로 남편의 등을 찌르게 된 것이다. 중증장애인이었던 Y씨는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구걸을 하거나 콩을 팔아 생계를 꾸리다 남편을 알게 되어 5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다. 비장애인 남편은 결혼이후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았고 Y씨가 어렵게 벌어들인 돈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그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한다. 술만 마시면 남편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어깨뼈를 탈골시켜 입원하게도 했다.

검찰은 Y씨에게 15년의 중형을 구형, 재판부는 Y씨의 상황과 사건 정황을 참작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성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처음이었던 이 사례는 여성·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Y씨가 1급의 중증 장애인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구명운동을 벌여서 얻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

3) 성적 폭력

각종 폭력 후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강제적인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 등을 말하며 여성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더욱 성적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경제적 폭력

상담을 하다보면 소수의 비장애 남성들이 여성장애인과 결혼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 아파트 열쇠나 차 열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귀는 여성장애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사용하고 그 빚을 고스란히 여성장애인이 떠맡게 되고 그 남자는 온데 간데 없고, 돈과 재산을 요구하거나,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하며 일도 못하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이에 속한다.

→ 사례 : 시각장애를 지닌 여성의 이혼 그 이후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시각장애를 지닌 40대 중반의 여성장애인이 있다. 부모님이 부유한 편으로 본인에게 물려준 돈이 있었다. 전 남편과는 교회에서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자 남편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옮길 것을 수없이 요구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녀의 돈은 남편 통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결혼 후 1년도 못되어서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니년 이빠서 살자고 한 건 아닌지 알지? 살아준 값을 해야지 돈 있는 것 내놔”

그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구타를 하였으며 남편은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고 힘겹게(돈을 노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혼했다. 그러나 그녀의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

5) 정신적 폭력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여러모로 소외당해 온 여성장애인에게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자존심(자아존중감)이 수없이 짓밟히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폭력을 통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3. 가정폭력과 법

가정폭력방지법에 현재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특화되어 있지 않다. 여성장애인 부분이 특화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시설여성장애인의 성폭력

1) 시설장애인의 성폭력 특징

시설 내 여성장애인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제외되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선택에 대한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의지 결여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각 시설장이나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과 시설종사자나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이거나 여성장애인이다. 피해대상의 수는 1명보다는 여러 명이 피해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기간도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시설장(시설 원장이나 목사), 특수학교 교장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과 시설종사자로 피해자에 대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우며 공개가 되더라도 다른 대상(자원봉사자, 보육사, 양호교사 등)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시설의 성폭력 사건이 상담이 되어 공론화 되기는 현재도 매우 어려운 처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권의식이 조금씩 퍼지며, 시설 내 자원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의 성장, 시설 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시설에 적을 둔 가족의 호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문제가 사회에 드러날 것이다.

2)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사례

<표 6>

지역	공론화 시기	가해자	피해자	제보자	대책위 여부	구속 여부	기타 비리	결과
충남 D원	2000년	원장(50)	원생 6명	자원봉사자	공대위	구속	공금횡령 재단비리 폭행	1심:실형 10년 2심:실형 4년

3) 발생원인

- ① 정부의 시설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 정책의 부재
- ② 행정기관의 사전지도와 감독의 소홀
- ③ 성폭행 발생 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묵인 방조
- ④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결여로 피해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⑤ 시설의 폐쇄적 구조
- ⑥ 열악한 근무 조건에 의해 시설직원에 피해자에 대한 사전예방(지속적인 관심, 성교육)이 불가능함
- ⑦ 친, 인척으로 구성된 시설직원과 관계자에 의한 사건 은폐
- ⑧ 시설장의 자기정화 노력의 부재와 사유화 인식 : 시설장의 사유화 의식은 성폭행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⑨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의 부재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정신지체·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각 지역에 대한 성폭력의 상황이 장애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상담 건수가 분석¹⁶⁾되고 있으

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크게 부각되어 수면위로 떠올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문을 열게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활동은 정신지체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에 대해 성폭력에 크게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밖에 장애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3년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소 2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를 근거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전반적 특성

(1) 상담유형 및 상담 회수

<표 1> 여성장애인상담유형 및 상담회수

<단위 : 회(%)>

상담소	전화	방문	내방	통신	기타	계
서울	564 (68.3)	124 (15.0)	66 (8.0)	28 (3.4)	16 (1.9)	798 (96.6) 826 (100.0)

(2) 내담자의 유형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은 본인보다는 주로 주변인이 64.0%로 나타나고 있어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표2> 내담자의 유형

<단위 : 회(%)>

상담소	본인	보호자	동료·이웃·교사·기관 등	계
서울	298 (36.0)	144 (17.5)	384 (46.5)	826 (100.0)

(3) 실사례 상담건수와 사례당 상담회수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여 방문상담을 하게되고 경찰 초등수사에 동석하고, 검찰진술시, 그리고 법정으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상담이 66.8%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속상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 실사례 상담건수와 사례 당 상담회수

<단위 : 건(%)>

상담소	1회	2 ~ 5 회	5 ~ 10 회	10 ~ 50 회	50회 이상	계
서울	29(33.2)	32 (36.8)	8 (9.2)	13 (15.0)	5 (5.8)	87 (100.0)

16)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p14, 2002,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 한국여장연 산하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의 2001년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분석 자료.

2)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 장애유형

<표4>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 건(%)>

상담소	지체	뇌병변	시각	정각 언어	정신 지체	발 달	정 신	중복장애	비장애	계
서울	6 (6.9)	8 (9.2)	3 (3.5)	6 (6.9)	48 (55.1)	1 (1.2)	7 (8.0)	5 (5.7)	3 (3.5)	87 (100.0)

(2) 연령분포

<표5> 피해여성장애인의 연령분포

<단위 : 건(%)>

상담소	10세-	10 ~ 20세	21 ~ 30세	31 ~ 40세	40세+	계
서울	4 (4.6)	29 (33.3)	39 (44.8)	14 (16.1)	1 (1.2)	87 (100.0)

(3) 학력분포

무학의 피해자는 나이 많은 어느 특정 연령에 나타나기보다는 10대와 20대, 30대에서도 나타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며 여성장애인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현실이다. 피해자의 질은 순수함과 분별력의 정도 매우 낮은 자존감과 맥없는 포기들 형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최고 약자로서의 불리함을 끌어안으며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표6> 피해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미상	계
서울	23 (26.4)	6 (6.9)	24 (27.6)	25 (28.7)	6 (6.9)	3 (3.5)	87 (100.0)

☞ 일반적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의무화 비장애인과의 관계성(인성)교육 필요

(4) 직업분포

피해자의 직업은 무학의 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열악한 조건의 여성장애인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7> 피해자여성장애인의 직업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 직	학 생	시설입소	공장	서비스	주 부	기타	회사원	계
서울	45(51.7)	29(33.3)	3 (3.4)	-	1 (1.2)	5(5.8)	2(2.3)	2(2.3)	87(100.0)

(5) 결혼 여부

<표8> 피해여성장애인의 결혼여부

<단위 : 건(%)>

상담소	미 혼	기 혼	미 상	계
서울	76 (87.4)	11 (12.6)	-	87 (100.0)

3) 여성장애인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 연령분포

<표9> 가해자의 연령분포

<단위 : 건(%)>

상담소	10~20	21~30	31~40	41~50	51~60	61~70	70세이상	미 상	불 특 정 다 수	계
서울	-	15 (17.3)	15 (17.3)	14 (16.1)	21 (24.1)	4 (4.6)	2 (2.3)	9 (10.3)	7 (8.0)	87 (100.0)

(2) 직업분포

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직업에 상관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0> 가해자의 직업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직	학생	농업	상업	공장	회사원	시설	교사	성직자	군인	막노동	기타	미 상	계
서울	12 (13.8)	2 (2.3)	10 (11.5)	9 (10.4)	1 (1.2)	9 (10.4)	6 (6.9)	3 (3.5)	2 (2.3)	2 (2.3)	9 (10.4)	4 (4.6)	18 (20.6)	87 (100.0)

4)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

(1) 피해의 유형

<표1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

<단위 : 건(%)>

상담소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계
서울	73 (83.9)	12 (13.8)	-	2 (2.3)	87 (100.0)

※기타는 성교육 등을 포함함.

(2)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1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건(%)>

상담소	자원봉사	근친	전/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목사등 (성직자)	모르는 사람	직장	기타	계
서울	5 (5.7)	10 (11.5)	2 (2.3)	6 (6.9)	25 (28.7)	6 (6.9)	2 (2.3)	22 (25.3)	3 (3.5)	6 (6.9)	87 (100.0)

※ 직장은 직장동료 및 상사를 모두 의미함

(3) 발생장소

<표1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발생 장소

<단위 : 건(%)>

상담소	피해자 의 집	가해자 의 집	시설 학교	직장	숙박 업소	여러 장소	야외	모르는 장소	기타	계
서울	19 (21.8)	10 (11.5)	11 (12.6)	3 (3.5)	8 (9.2)	17 (19.5)	10 (11.5)	7 (8.1)	2 (2.3)	87 (100.0)

※여러 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여관 등을 의미함

※야외는 야산, 논, 밭 등을 의미함

(4) 가해자 수

<표14> 가해자 수

<단위 : 건(%)>

상담소	1명	2명	3명 이상	계
서울	71 (81.5)	1 (1.2)	15 (17.3)	87 (100.0)

(5) 피해의 지속성

<표15> 피해의 지속성

<단위 : 건(%)>

상담소	1회	2회~10회	1년 이상~5년 이하	5년 이상	계
서울	16 (18.4)	11 (12.6)	48 (55.2)	12 (13.8)	87 (100.0)

(6)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출산·낙태)

<표 16> 임신(출산·낙태)

<단위 : 건(%)>

상담소	임신(낙태·출산)	실사례
서울	14 (16.1)	87 (100.0)

(7) 성폭력 사건 진행에서의 고소·고발 여부

<표 25> 고소·고발 여부

<단위 : 건(%)>

상당소	고소·고발 여부	실사례
서울	41 (47.1)	87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

‘성폭력과 성의식 차별’부분 토론에서 일부 발췌

1.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가?

→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성적정체성 부정.

“그런 꼴로 다니지 마라” “치마도 제대로 못 내리면서....”

- 성적 자기 결정권의 부재, 존재적 자존감 박탈되거나, 내부적 자기 부정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여성·인간으로서의 혼란이 조성된다).

- 성장과정에서는 무성적이거나 나약하게 취급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여성장애인 개인의 여건 이상으로 여성적 역할 부담.

2. 장애 유형별로 다르다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들의 성적 태도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보 차단 결과물로서 독특한 문화권 형성 ‘문화의 섬’현상

- 대중문화 자막 처리 시각적 안내 활성화 필요.

* 시각장애인

→ 안마시술소 업종중사제에 대한 편견 원인

- 시술소 내에서 매춘 강요·성희롱·성폭력이 있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 특수학교내 안마 교육 과정에 있어 성교육(성폭력 예방) 내용이 들어가야

- 다양한 직종 개발과 직업선택의 기회마련, 다양한 분야에 고용기회 확대해야

* 정신지체

→ 평생동안 성폭력에 노출

- 반복적인 꾸준한 성교육 필요, 성교육 의무화

-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 중요

▶일반적 정규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의무화, 비장애인과의 관계성(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제는 여성장애인과, 결혼은 비장애여성을 선택하는 경우

법적 차별로 정의할 수 있는가?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1)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사회 인식 문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상담을 이어가며 가장 가슴아프게 다가온 문제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사회적 인식임을 한 두 번 절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오랜 세월 이어온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 본인들의 상처, 내 죄가 커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았다는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를 지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막히는 비장애 형제들의 결혼문제 등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오랜 역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본인들에게는 2중 3중의 장애를 겪어지게 하였고 살아가는데 더욱 짐이 되었으며, 가해자들에게는 '너 같은 여성장애인쯤이야'하며 수시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가해자의 나이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가해자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여성의 성폭력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인습을 습득하며 살아온 그들의 가부장적 요소와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생각할 때 여성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

3) 낮은 신고율

우리 나라의 성폭력 상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신고율은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볼 때 약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폭력상담의 실제, 1955, pp60-61)

각 장애 유형별 신고 비율을 굳이 살피기 이전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100%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

4)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1997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제 6조 특수강간 등에 관한 조항에는 적용대상이 신체장애인만으로 되어있고 정신상의 장애는

빠져있다.

또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관련 성폭력법안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신고율을 낮게 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정신지체 영역에서 일부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 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Ⅲ.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1. 정책적 대안

- 1)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과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인식 교육에 따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 2) UN과 북경세계여성대회 등 국제기구에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인권과 폭력 문제가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3)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장애인 관련법안에 관련된 조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소가 전국 16개 시도지역으로 확대 설치 운영되고, 보호시설이 확대 설치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지원이 여성장애인의 시설과 현실 조건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6)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7)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기관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장애영역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9) 정부관련 기관 내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 1) 장애인의 특성과 가정폭력·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 2) 여성주의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 3)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4)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 5) 피해자에 대한 재 피해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6)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7) 피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 8)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IV. 나가는 이야기

함께 하며 같은 여성의 자리에서 먼저 느끼는 공감대와, 같은 여성장애인으로 나누는 글로 다 못하는 애절함과, 거기 더없이 높고 견고한 사회인식의 벽에 대하여 분노하며, 때로 한없이 소진되는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가야하는 길 위에서, 휴일 하루 모질게 맘먹고 종일 원고와 씨름했다. 이 길 위에서 번번이 휴일을 도둑맞는다.(내 휴일을 돌리도!)

그래도 여성장애인들이 자꾸 작아지는 자리·여성장애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자리·여성장애인들이 자꾸 분노하는 자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하여서 그 길을 걷기에 너무도 힘든 동지들을 꼭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서로의 영성의 성숙을 위해·서로를 부지런히 키워준다면 정말 좋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

그 애씀 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엄마로서 겪는 차별 사례

봉칭자(농아여성회)